

24. 공직자 병역공개 사건

<헌재 2007. 5. 31. 2005헌마1139 공직자등의병역사항신고및공개에관한법률 제 3조등 위헌확인, 공보 128호, 646>

가. 사건의 배경

이 사건은 4급이상 공무원들의 병역 면제사유인 질병명을 관보와 인터넷을 통해 공개하도록 하는 것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여 위헌이라면서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한 사건이다.

1998년 7월 군과 검찰의 수사로 병무비리의 실태가 드러나면서 국민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다. 이에 공직자 및 공직후보자와 그 직계비속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를 제도화하여 공직을 이용한 부정한 병역면탈을 방지하고 공직사회의 투명성을 제고함으로써 병역의무를 자진 이행하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의원입법으로 1999. 5. 24. 공직자등의병역사항신고및공개에관한법률(이하 “법”)이 공포되어 동 일자로 시행되었다.

법은 그 후 개정되었는데, 병역사항 공개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병역사항 공개대상을 1급 이상의 공직자 등에서 공직자윤리법에 의하여 재산을 등록하는 직위인 4급 이상의 공직자 등으로 확대하고, 최종 병역처분을 할 때의 질병명 및 처분사유를 병역사항에 포함시켜 신고·공개토록 하였으며, 위 병역사항을 국민들이 보다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관보뿐만 아니라 인터넷을 통하여도 공개하도록 하였다.

청구인은 한쪽 눈 실명으로 병역면제처분을 받은 공무원으로서 법의 해당조항들이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등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결정의 주요내용

헌법재판소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계속적용을 허용하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하였다.

사람의 육체적·정신적 상태나 건강에 대한 정보, 성생활에 대한 정보와 같은 것은 인간의 존엄성이나 인격의 내적 핵심을 이루는 요소이고,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하여 공개가 강제되는 질병명은 내밀한 사적 영역에 근접하는 민감한 개인정보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타인의 지득(知得), 외부에 대한 공개로부터 차단되어 개인의 내밀한 영역 내에 유보되어야 하는 정보이다. 이러한 성격의 개인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제한하는 국가적 조치는 엄격한 기준과 방법에 따라 섬세하게 행하여지지 않으면 아니된다.

우리 사회는 병무비리의 척결 및 병역부담평등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대단히 강하고, 질병은 병역처분에 있어 고려되는 본질적 요소이므로, ‘병역의무의 자진이행에 기여’ 등의 입법목적 달성하기 위해서는 질병명에 대한 신고와 그 적정한 공개 자체는 필요하다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법률조항은 사생활 보호의 헌법적 요청을 거의 고려하지 않은 채 인격 또는 사생활의 핵심에 관련되는 질병명과 그렇지 않은 것을 가리지 않고 무차별적으로 공개토록 하고 있으며, 일정한 질병에 대한 비공개요구권도 인정하고 있지 않아, 신고의무자인 공무원의 사생활의 비밀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

우리 현실에 비추어 질병명 공개와 같은 처방을 통한 병역풍토의 쇄신이 필요하다 하더라도 그것은 특별한 책임과 희생을 추궁할 수 있는 소수 사회지도층에 국한하여야 할 것인데, 4급이상의 공무원이 모두 여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법률조항이 공적 관심의 정도가 약한 4급이상의 공무원들까지 대상으로 삼아 모든 질병명을 아무런 예외 없이 공개토록 한 것은 입법목적 실현에 치중한 나머지 사생활 보호의 헌법적 요청을 현저히 무시한 것이고, 이로 인하여 청구인들을 비롯한 해당 공무원들의 헌법 제17조가 보장하는 기본권인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다만,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하여 단순위헌 결정을 함으로써 4급이상 공무원 모두에 대하여 어떤 질병명도 당장 공개할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므로, 입법자가 사생활 제한을 완화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하되, 입법자의 개선입법이 있을 때까지 계속 적용을 명한다.

이 결정에는 주문의 유형에 관한 소수의견이 있었다.

재판관 이공현의 단순위헌 의견은,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한 질병명 공개제도는 중대한 공적 이익을 달성하기 위한 불가피한 수단이라고 볼 사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일방적으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근본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어서 위헌이고, 헌법재판소로서는 인간의 존엄성과 인격의 핵심요소를 훼손하여 기본권을 침해하는 이러한 제도에 대하여 단순위헌을 선고하여 법질서에서 제거함으로써 헌법질서를 수호하는 단호한 태도를 취하여야 한다고 하였으며,

재판관 조대현의 일부 위헌 의견은, 병역의무를 부정하게 감면받은 것으로 밝혀지지 아니한 경우에도 병역의무 감면사유를 구체적인 질병명까지 포함하여 무조건 공개하도록 하는 부분만 헌법에 위반되므로, 그 부분만 한정하여 위헌을 선언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한편 재판관 이동흡, 재판관 송두환의 적용중지 헌법불합치 의견은, 계속적용 헌법불합치 결정은 어디까지나 예외적인 것으로서 적용중지 헌법불합치 결정이라는 원칙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을 정당화하는 불가피한 예외적 사유가 존재할 경우에만 허용

된다 할 것인데, 이 사건의 경우 계속적용을 명할 불가피한 예외적 사유가 없으므로 적용중지를 명하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다. 사후경과

2007. 12. 14. 법률 제8684호로 법은 개정되었는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질병명·심신장애내용 또는 처분사유의 비공개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병무청장은 이를 공개하지 못하도록 하였다.